

의안번호	2211894
의 퇴 인	추경호의원
회 답 일	2025.5.9.
추계번호	25E27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근로자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 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142.9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229.5억원(연평균 △245.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안 제12조제3호머목)	-142.9	-279.8	-274.3	-269.3	-263.2	-1,229.5
						-245.9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2	안 제12조제3호머목 (비과세소득)	○ 근로자의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 (현행)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u>월 20만원</u> 이내의 급여 - (개정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u>자녀 1명당 월 20만원</u> 이내의 급여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제3호머목 (비과세소득)	0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되며, 부칙에 의해 동 법을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서 동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보육 관련 비과세소득은 동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 이에 따라 동법은 2025년 중 통과되며 2026.1.1.부터 공포, 2026.7.1.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
-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라 1인당 보육수당액은 비과세 한도 확대 금액 증가율(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2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녀 1명 월 20만원 동일, 자녀 2명 월 20만원 → 월 40만원으로 2배 증가 가정, 자녀 3명 월 20만원 → 월 60만원으로 3배 증가 가정) 만큼 증가 전제
 - 2024년부터 1인당 출산·보육수당 한도 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 기준 1인당 비과세 대상 출산·보육수당 금액을 추정, 향후 5년간 동 수준을 유지한다고 전제
 - 2024년 귀속분부터 출산·보육수당 자료는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
 - 2025년 귀속분부터는 출산수당과 보육수당을 분리하여 출산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폐지(월 20만원 → 전액)하되, 보육수당의 한도는 월 20만원으로 동일
 - 영유아 자녀수별 가구 수가 영유아 자녀 1명/ 2명/ 3명이상으로 구분됨에 따라, 영유아 자녀 3명 이상인 경우는 영유아 자녀가 3명이라고 가정하여 추계
- 비과세 대상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출산·보육수당 신청인원 중 자녀수별 비율은 통계청 인구총조사의 영유아 수별 가구 수 비중을 활용하여 추정
 - 2023년 기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수는 총 135.6만가구이며, 이 중 영유아자녀가 1명인 가구는 69.1만가구(전체 가구수 대비 51.0%), 2명인 가구는 54.3만가구(전체 가구수 대비 40.0%), 3명 이상인 가구는 12.2만가구(전체 가구수 대비 9.0%)임
-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영유아 자녀수별 가구 수)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영유아 자녀가구*수는 135.6만가구이며, 영유아 자녀수별로 가구수 구분 가능

*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023년 영유아자녀 가구 중 영유아자녀가 1명인 가구는 69.1만가구(전체 가구수 대비 51.0%), 2명인 가구는 54.3만가구(전체 가구수 대비 40.0%), 3명 이상인 가구는 12.2만가구(전체 가구수 대비 9.0%)임
- 동 비중을 전체 비과세 보육수당 지급 인원에 적용하여 영유아 자녀수별 가구 수를 추정하였으며, 이의 총급여 규모별 분포는 국세통계연보의 비과세 보육수당 분포를 따른다고 전제

[표 2] 영유아 자녀수별 가구 수

(단위: 만가구, %)

		영유아 자녀 합계	영유아 자녀 1명	영유아 자녀 2명	영유아 자녀 3명 이상
가구수	2021	156.6	75.0	66.0	15.6
	2022	144.9	71.4	59.7	13.8
	2023	135.6	69.1	54.3	12.2
비중	2021	100.0	47.9	42.2	10.0
	2022	100.0	49.3	41.2	9.5
	2023	100.0	51.0	40.0	9.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 근로자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결과, 2023년 자료 기준으로 약 307.0억원의 근로소득세수 감소가 예상

- 국세청의 현행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액('23년 귀속소득 기준)에 대한 총급여 구간별 자료를 기준으로 2024년부터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 증가(2배)를 반영한 후, 1인당 보육수당이 개정안에 따라 비과세 한도 확대 금액 증가율(자녀 2명인 경우 2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배 증가 가정)로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 추계

[표 3]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3년(귀속연도) 기준

총급여 규모	공제 인원, 명				1인당 평균 비과세액, 백만원					실효세율 ⁵⁾ (E) %	1인당 세수감소효과 (F=D×E), 백만원		총 세수감소효과 (G=A×F) 억원		
					현행 ³⁾	개정안 :자녀 2명인 경우		개정안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⁴⁾			자녀2명 (F1= D1×E)	자녀3명 이상 (F2= D2×E)	자녀2명 (G1= A1×F1)	자녀3명 이상 (G2= A2×F2)	합계 (G= G1+G2)
	합계 ¹⁾ (A=A1+A2 +A3)	자녀 1명 ²⁾ (A1)	자녀 2명 ²⁾ (A2)	자녀 3명 이상 ²⁾ (A3)		현행 (B)	개정안 (C1)	차이 (D1=C1－ B)	개정안 (C2)						
전체	376,645	191,962	150,822	33,860	1.52	3.04	1.52	4.57	3.04	12.28	0.19	0.37	211.8	95.1	307.0
1천만 이하	－	－	－	－	－	－	－	－	－	－	0.00	0.00	0.0	0.0	0.0
1.5천만 이하	295	150	118	27	0.75	1.49	0.75	2.24	1.49	0.21	0.00	0.00	0.0	0.0	0.0
2천만 이하	2,106	1,073	843	189	0.97	1.93	0.97	2.90	1.93	0.90	0.01	0.02	0.1	0.0	0.1
3천만 이하	11,782	6,005	4,718	1,059	1.33	2.65	1.33	3.98	2.65	1.60	0.02	0.04	1.0	0.4	1.5
4천만 이하	23,385	11,918	9,364	2,102	1.38	2.76	1.38	4.15	2.76	3.06	0.04	0.08	4.0	1.8	5.7
4.5천만 이하	19,893	10,139	7,966	1,788	1.40	2.80	1.40	4.19	2.80	4.62	0.06	0.13	5.1	2.3	7.5
5천만 이하	28,219	14,382	11,300	2,537	1.39	2.77	1.39	4.16	2.77	5.59	0.08	0.16	8.8	3.9	12.7
6천만 이하	78,600	40,060	31,474	7,066	1.42	2.84	1.42	4.26	2.84	6.84	0.10	0.19	30.6	13.7	44.3
8천만 이하	122,743	62,558	49,151	11,035	1.54	3.09	1.54	4.63	3.09	8.78	0.14	0.27	66.7	29.9	96.6
1억 이하	44,667	22,765	17,886	4,016	1.66	3.31	1.66	4.97	3.31	11.60	0.19	0.38	34.4	15.4	49.8
2억 이하	40,476	20,629	16,208	3,639	1.79	3.59	1.79	5.38	3.59	17.76	0.32	0.64	51.6	23.2	74.8
3억 이하	3,043	1,551	1,219	274	1.79	3.58	1.79	5.37	3.58	26.69	0.48	0.96	5.8	2.6	8.4
5억 이하	1,046	533	419	94	2.00	4.00	2.00	6.00	4.00	30.94	0.62	1.24	2.6	1.2	3.8
10억 이하	304	155	122	27	2.07	4.14	2.07	6.22	4.14	34.55	0.72	1.43	0.9	0.4	1.3
10억 초과	86	44	34	8	2.23	4.47	2.23	6.70	4.47	40.06	0.89	1.79	0.3	0.1	0.4

주: 1) 국세통계연보 비과세 신청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 2023년 귀속기준

2) 자녀수별 인원수는 통계청 인구총조사의 영유아 자녀수별 가구수 비중을 활용하여 추정

3) 2023년 귀속 1인당 출산·보육수당액이 2024년 귀속분부터 시행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월10만원 → 월 20만원)에 따라 2배 증가한다고 가정

4)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가 3명인 경우로 가정하여 추계

5)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 비율

- (향후 5년간 대상 인원수 추정) 향후 5년간 대상 보육수당 비과세 신청 인원수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22년 기준)자료의 증가율을 활용해 추정
- 2023년 기준 자녀수별 보육수당 비과세 신청 인원 추정치에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중 미혼자녀 있는 가구(가구주 연령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향후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전망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아, 가구주 연령을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제한한 후, 해당 가구의 향후 증가율을 사용
 -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2023년 귀속기준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출산·보육수당 신청 인원 대비 신청자의 연령이 3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의 비중은 각각 98.2%에 달함
 - 향후 5년간 총급여구간별 인원 비중은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표 4]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 전망, 2023~2029

(단위: 만가구)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미혼자녀 있는 가구 (가구주 연령 30세 ~60세)	631.8 (-2.8)	617.9 (-2.2)	604.7 (-2.1)	592.3 (-2.1)	580.6 (-2.0)	570.0 (-1.8)	557.2 (-2.3)

주: 1. () 는 전년대비 증가율

2. 미혼자녀 있는 가구는 부부+미혼자녀, 부+미혼자녀, 모+미혼자녀, 부부+미혼자녀+부(모)의 합계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진국편, 2024.9

4. 세수효과 요약

- 근로자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 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142.9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229.5억원(연평균 △245.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142.9	-279.8	-274.3	-269.3	-263.2	-1,229.5	-245.9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강민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민지	02-6788-4746	min1231@assembly.go.kr